

2005. 12. 23 (금) 10:00
제1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 조 레 안 서 사 보 고 서

1.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 1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8
4. 거창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1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4.
- 나. 발 의 자 : 이 현 영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 2005. 12. 10.
- 라. 상정일자 : 2005. 12. 21(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5 - 85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우리 군에서는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하여 어려운 농민의 건축 시 설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으나, 2005년 5월 26일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무료설계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므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으로 정하고,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정함(안 제2조)
- 무료설계는 대장 기재신청 대상 등의 건축물로 정하였음(안제3조)
- 군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무료설계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설계비 지원대상은 마을공동이용시설물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농업인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며(안 제6조)
- 지원방법은 설계사무소와 군수 간에 단가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만 가능토록 변경되므로 인해 인허가부서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인력부족으로 건축물 무료설계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므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주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 지원 대상을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로 정하고 건축사는 물론 관련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료설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하여 적정한 규제와 시행상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으며,
- 지원 방법은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비 단가를 계약하여 건축설계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치인 것으로 검토됨.
- 집행부서에서는 지원되는 농업인 주택과 지원받지 못 하는 일반 서민 주택과의 형편성 문제와 06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업무처리량이 증가되어 무료설계반의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료설계반 운영을 원활히 하여 농민에게 적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설계가 가능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기타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 제2조(정의) 제1호의 “농업인 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 주택으로 정한 것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와 퇴비사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7. 심사 결과 : “수정안가결”

-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무료 설계 및 설계비를 지원 하는 조례로서, 지원대상이 연면적 100제곱미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므로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축사와 퇴비사도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할 시는 무료 설계 및 설계비를 지원 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데는 표준 설계도를 활용하면 설계비가 필요 없으므로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급하는 의견도 제시 되었으나 설계도가 신축자의 현지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축 농가주택의 구조가 다양하여 표준설계도로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 주택”이라 함은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u>농가 주택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1.-----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퇴비사를 포함한다.</p>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상정일자 : 2005. 12. 21(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5 ~ 66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단계별 개정 계획에 따라 1단계 개정(2005. 6. 24.시행, 도조례 폐지)이 완료되어 광고물 등의 허가,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군조례를 개정하여 일원화시키기 위함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및 기간연장(안 제2조 내지 제4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5조)
- 각종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등(안 제6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안 제20조, 제21조)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현 시가지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조례를 전면개정 하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많아졌음에도 규제가 강화된 사항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시에 대폭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마찰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례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미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등 각종 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각종 시설에 맞게 정하였으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면서 주거환경 보호 및 축사나 농작물 피해와 연관될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게 정하고, 공익광고의 표출 방법도 규정하여 주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정하였다고 검토되었으며,
- 특히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종류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 등으로 정하였고, 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절차를 규정하여 안전도 검사에 합격할 경우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한 것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규격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검토되었으며,
- 위반된 광고물 등을 제거하여 관리하는 방법과 반환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제28조에서는 강제철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30.
- 라. 상정일자 : 2005. 12. 21(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5 - 75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235호 2004. 10. 22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 산업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물,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 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련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설물의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 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 군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시장법인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정해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군수 소유의 시설물 등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토록 하고, 시장법인은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하였으며,
-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를 두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행사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정하여 보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장의 자율을 보장하면서 군의 재산을 보존하도록 조치한 조례라고 검토되었음.
- 동 제정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30.
- 마. 상정일자 : 2005. 12. 21(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 바. 의안번호 : 제2005 - 76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법률, 제7235호 2004. 1. 30.) 따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개설 기간, 운영·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경상남도 시군 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따른 미터법 적용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설시장, 상설시장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임시시장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임시시장 개설취소 및 개설기간을 정함(안 제5,6조)
-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8,9조)
- 공설시장의 사용료 납기,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13조)

- 공설시장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15,18조)
- 원상회복과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21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내용의 정비와 도량형 적용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각종 시장(공설, 상설, 임시, 정기시장)의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임시시장의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시장 개설지정 신청방법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였으며,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권의 양도 또는 전매 금지 등 사용권 양도금지 규정을 정하여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시장의 개성과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일관성 있게 규정되었다고 검토되었음.
- 기타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